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1월 13일, 남진삼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8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남진삼 의원)

가. 제안이유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 시(2024. 6. 28.) 정비된 조항(제3조제2항)의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이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그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에 위임조항 규정(안 제1조)
- 여비의 지급 구분 명시(안 제2조)
-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등의 내용 정비(안 제3조)
- 준용 조항 현행화(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유진)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남진삼 의원
- 제안일자 : 2025. 11. 13.
- 회부일자 : 2025. 11. 18.
- 상정일자 : 2025. 11. 25.

2. 제안이유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 시(2024. 6. 28.) 정비된 조항(제3조제2항)의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이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그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에 위임조항 규정(안 제1조)
- 여비의 지급 구분 명시(안 제2조)
-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등의 내용 정비(안 제3조)
- 준용 조항 현행화(안 제4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서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의 가산징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평창군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부당수령 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에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를 명시함.
- 안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에서 기존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와 중복·상이한 규정을 정비함.
- 안 제3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등)에서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서 준용 대상 법령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간 중복·불일치를 해소하여 여비 수령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진삼 의원)

의안 번호	507
----------	-----

발의연월일: 2025년 11월 13일

발 의 자 남진삼 의원

찬 성 자 김광성, 이은미, 이창열의원

1. 제안이유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 시(2024. 6. 28.) 정비된 조항(제3조제2항)의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이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그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제3조(지급기준) ② 여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 2. 4., 2024. 6. 28.>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평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가. 목적에 위임조항 규정(안 제1조)
- 나. 여비의 지급 구분 명시(안 제2조)
- 다.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등의 내용 정비(안 제3조)
- 라. 준용 조항 현행화(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평창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비 부정 수령 사실을 적발한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환수 대상인 부정 수령액
2. 가산징수 금액
3. 납부기한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

를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 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 및 별표 4에 따라 발급 받은 지방자치단체구매 카드(이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라 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정부구매 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3.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평창군의 회의장”으로 본다.
4.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평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로 본다.
6.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7.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 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8.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평창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2021. 6. 8.>
-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1. 30.>

<공무원 여비 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개정 2022. 5. 9.>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p>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p>
	<p>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p>
	<p>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p>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23. 3.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	------	------	------	-----------	-------------	--------------	-------------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평창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비용 연평균 5천만 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남진삼의원
연락처	(033) 330 -2500